



기호	시보건1414	기안용지		결구정 10 조 31	
문서번호	16802	(전화번호)		보건사희극 장전필사항	
제정기한		기안자		결재	
제정일자	1966.10.5	기안자성명		결재일자	
보존년한		기안번호	66.9.19.	결재일자	
보조	보건과장	<div data-bbox="967 379 1151 55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1966. 10. 5 재 </div>			
기관	위생계장				
주요사항	<div data-bbox="585 590 825 67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공고제 163호 </div>				
경수참	유신조	<div data-bbox="585 882 720 99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1966. 10. 5 검열 </div>			
제 목	66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1. 당시 시행 66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조리사에 관한
 규칙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 기록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예산(세입,세출)집행은 공고후 응시자의 총수
 에 따라 산출하여 집행할 것이며 신문공고료는 공고즉시 청구에 의하여 직
 불코지 합니다.
 3. 조리사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되 보건사희부령에 의한 양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에 대하여

106
12

보건사희부령제 166호 (65. 11. 25)에 의거 학과시험을 면제코자 함
 첨부 66년 조리사 자격시험 기록서 1부. 끝. 215



20172 94

고시사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시험 66년도 제1회 조
미사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1. 시험일자

가. 학과시험

1966. 10. 27. 09.00 부터 (1일간)

나. 실기시험

1966. 11. 3. 09.00 부터

1966. 11. 7. 까지 (5일간)

2. 시험장소

구립조리 기술학교 (기내중구 중무도 3가 50번지)

3.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 (1) 취생법규
- (2) 공중보건학
- (3) 영양학
- (4) 식품학
- (5) 식품위생학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수험할수 있다.

다만, 보건사취부령에 의한 소정에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
을 면제하며 학과시험합격자와 동일시 한다.

나. 실기시험

- (1) 한 식
- (2) 양 식
- (3) 중국식
- (4) 일본식

16-2 364

상기 분야중 일 분야도 한다.



4.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의장이 증명하는자

(2) 음식점 영,업증 1월을 통한 1일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어관, 호텔,요리집, 카바레 또는 바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자

5. 응시절차

가. 원서접수기간

66. 10. 15. 부터 66. 10. 21. 까지 (7 일간)

나. 원서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보건사 확국 보건과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경양식) 1봉

(2) 조리업무종사자증명 (응시원서이면)

(3) 토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식품위생법제 31조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지않음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5) 사진 (3×4센치 탈모 상반신) 4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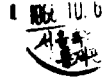
(6) 수수료 (시 수입증지) 200원

라. 수수료는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교부한다.

마. 원서접수기간 경과후에는 이유어하를 불문하고 일체 접수치 않는자.

16-3 365

217



6. 합격자 발표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 일자

66. 10. 31. 14.00 시청주청에 게시한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일자.

66. 11. 11. 14.00 시청주청에 공시한다.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7.30 까지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볼펜, 만년필,인크등 연필제외)와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 (식도, 위생복 위생모 등)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나. 수험개시시간에 지참물자는 수험을 불허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기 보건국나 각구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하도록한다.

8. 시험합격기준

가. 학과시험 합격기준

시험 과목의 총점이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락은 40점 미만으로 한다.

시험 과목의 총점이 평균 4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전 과목에 1과목이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정한다.

나.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 시험위원 2명씩 제집을 합하여 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360점미만을 불합격으로 한다.

9. 시험위원 구성

가. 본 시험위원씩 위원장은 보건사 직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국장장으로 한다.

나. 학과시험위원은 과목별로 1인씩 하며, 실기시험위원은 분야별로 2인씩으로 한다.

다. 학과시험위원은 과목별로 당시보건관계 간, ~~이~~로서 권위있는 자
 노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조리사인허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동일본
 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1명과 대학영양학과 교수로서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 7조 7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피부장관에 승인을 얻어
 위촉 한다.

라. 시험위원 선정 및 위촉은 별도 행한다.

10. 시험문제 선정

가. 학과시험

시험위원으로부터 출제권 40문제 중 20문제를 시험위원장 부위원장
 의 직권으로 선정하여 답안지를 작성한다.

나. 실기시험

각분야별 시험위원과 본 위원장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시험당일 즉
 석에서 선정 재기하여 시행한다.

11. 공고방법

가. 일간신문 2개사에 1페이지 공고한다.

나. 공고안 발첨

12. 재입예청액

공고후 응시자 총수에 의거 산출함.

13. 소오예산

가. 응시자 총수에 의거 소오예산을 산출요구한다.

나. 자격시험요령 신문공고료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신문공고료

(1) ~~금~~ 8,400원

종	별	소 오금액	산출근거	지출비목	지출방법
신문공고비		6,000원	100원 X 2단 X 70행 X 2사	행정비, 사무행정 일반사무 수수료 및 수선비	지출방법청구에 의한 직불

219

90

15-5

367

다. 본 시험중 실험시 실험용 재료가 구입에 대하여는 노조예산 범위내에서
전도자금으로 집행한다.



시험 관리

가. 시험위원회 직무

부 시	위 원 명	위 추	직 무
위원장	보건사학국장		1. 위원장은 시험기관중위원 과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위원장	보건과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학구및 시험기시험문제담안의 보안을 책임진다.
간 사	위생계장		1. 시험실지에따른 준비및시험 장을 관리하며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학구시험 위원		별도위족 (5학구5명)	1. 담당과목에출제및 채집에 책임진다.
시험기시험 위원		별도위족 (4분야)6명	1. 담당분야에출제및 채집의 책임진다.
서 기	보건국 위생계직원 전		1. 시험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 당한다.

나. 학구시험 출제방법

- (1) 위촉받은학구 시험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시험문제 20문제를 출제하여 과목별로 10분 이내에 해당할수있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 (2) 출제범위는 국민학교 졸업성도의자에 알맞는 문제라야 한다.
- (3) 출제한 시험문제는 당해시험위원이 밀봉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시험장에 관리및 감독

- (1) 보건국직원및 각구보건소 직원1명씩을 차출하여 각시험장 공
표 2 명씩으로 감독원을 배치한다.

- (2) 감독원은 "지된 시험장이외에 시험장 출입을 금하며 장에서 의 시험답안지를 수집하여 수집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시험장내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발하는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자를 시험위원회에 인계 폭장시키는 책임을 진다.
- (3) 위원회 기기는 감독원의 배치 및 답안지수집에 책임을 진다.
- (4) 시험답안의 채점은 당해 시험문제를 출제한 학과시험 위원에 한다.

제 안

수신 구립조리 기술학교장

제목 동 건

별첨공고문과 같이 당시 시행 66년도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코자 하는바 귀고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장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기립위원 추천

1. 당시 시행 66년도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지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는바 귀하를 조리가학과시험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66.10.14
까지 이력서 2통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수신처. 서가 34-72. 43.

223

86

15-9 371

봉제

제 1 장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시험위원 추천 의뢰

당기 시행 66년 조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벌지 공고문과 같이 실시
케 되어 조리사 실기시험 위원을 추천 의뢰하오니 66. 10. 14. 까지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기시험 위원

양식, 한식, 중국식, 일본식 각 1명

나. 실기시험 위원의 자격

(1)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같은분야 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2) 대학 영양학과 교수

다. 구리서류, 이력서 2통 (사진첨부)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대한요식업 협회 중앙회장

한국조리사 협회장

명지여자대학

숙명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

구림조리기술학교장

덕성여대

건국대학

수도여대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널리 알려 다수 응시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1. 보건사학부 장관

2. 나 2-11

3. 대한요식업 협회장

4. 대한숙박업 협회장

5. 카바레 협회장

6. 한국조리사 협회장

7. 구림조리기술학교장

8. 서울고등기술 학교장

제 6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 건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니 관계기관에 널리 알려 다수 응시토록 함것.

수신처. 서사 34-42.


제 7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보건사학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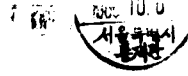
제목 동 건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별첨 함

공고문과 같이 '시'하오니 각 신문, 라디오, 모든 조처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제 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3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66. 10. 0
1966. 10. 0
서울특별시 상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66. 10. 27. (1일간)

나. 실기시험 66. 11. 3. 부터 66. 11. 7. 까지 (5일간)

다. 장 소 구립조리기술학교 (중구충무로 3가 50)

2.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위생법규, 공중보건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나. 보건사과부경에 의한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을 면제하며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수험할수 있다.

다. 실기시험; 한식, 양식, 중국식, 일본식 중 1분야.

3.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 또는 이와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자.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자.

(2) 음식점 영입증 1월을 통한 1일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 하는 식당, 여관, 호텔, 요리집, 카페, 또는 빠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자.

4. 응시절차

가.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1) 66. 10. 15. 부터 66. 10. 21. 까지 (6일간)
- (2) 서울특별시 보건과 위생계

나.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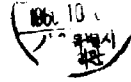
- (1) 응시원서(소정양식) 1공
- (2) 조리업무종가자증명 (응시원서 이면)
- (3) 모적조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식품위생법 제 21조 제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 (5) 사진 (3x4 센치 탈모 상반신) 4매.
- (6) 수수료 (응시입증기) 200원

5.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7.30 까지 각국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볼펜, 만년필)와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구(식도, 위생복, 위생모 등)를 지참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과 (22.9067)에 문의할것.

조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석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조기사 자격시험에 응하고자 자격요건에
확인을 받고 별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1. 응시구분 식 부

1966. 10. .

지원자 인

조리업무 종가자 증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 1. 종사기간. 196 . . . 부터
196 . . . 까지.
- 2. 종사직위.

상기자는 당 시설(기관)에서 조리업무에 상기기간중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함.

1966. . . .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성명.

인

* 기관인 경우는 필히 기관직인을 받음